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92

발의연월일: 2020. 12. 1.

발 의 자:임오경·이수진·유정주

이상헌 · 장철민 · 김민철

박성준 • 윤후덕 • 서영교

전용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으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 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호).

법률 제 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 이 될 수 없다. 1. 활동지원급여 수행상의 위험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 하는 자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